

이사회규정

제정 2013년 01월 07일

개정 2021년 06월 28일

개정 2022년 03월 04일

개정 2022년 06월 22일

개정 2023년 08월 0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휴메딕스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 결의사항,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내용을 의결하며, 주요내용은 제11조(부의안건)를 따른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제5조(의장)

- ① 이사회는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7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은 이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6조(감사의 출석) (2022.06.22 삭제)

제7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45일 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 2(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1조(부의안건)

① 이사회는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3)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해임
- (5)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6) 주주총회의 소집
- (7)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
- (8) 영업보고서의 승인
- (9)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 (10)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 (11)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 (1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13)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14) 신주의 발행
- (1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16)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1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8)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 (19)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20) 자기주식의 소각
- (2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22) 분기배당의 결정
- (2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24)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 (25)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 (26)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 (27)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 (28)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 (29)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30) 교환사채의 발행

(31)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

(32)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1) 정관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5) 이사·감사위원의 해임

(6) 자본금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9) 사후설립

(10)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13) 주식의 분할

나. 보통결의 사항

(1)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2) 이사의 보수의 결정

(3) 재무제표의 승인

(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

(5) 현금·현물·주식배당의 결정

(6) 준비금의 감소

다. 특수결의

(1)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3. 경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나. 사업계획의 승인

다. (2023.08.08 삭제)

라. 공장, 사무소,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마. 경영진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

바.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

사. (2023.08.08 삭제)

아. 자기자본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자. 자산총액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취득 및 처분

차. 자기자본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및 증설

카.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해지

타.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

파.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하.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

가.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

나.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다. 근로환경 및 노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제기

마.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바.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4. 회계·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기자본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

나. 자기자본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담보제공

다. 자기자본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입

라. 자기자본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마. 자기자본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전 가지급 및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

바. 자기자본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

사. 2.5억 이상의 기부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

2.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

3.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제12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전항의 의사록의 부분을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한 임원 또는 업무상 관계 있는 임원에게 송부한다.
- ④ 이사회 부의 안건과 의사록은 사내 이사회 관할 부서가 보존한다.

제15조(비용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에게 회의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8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의 기준)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과 자산총액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다.

- ①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 부채총액±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 ②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주)휴메딕스 이사회 규정 제·개정 이력표

제개정 이력	비고
2013. 01. 07 제정	-
2021. 06. 28 개정	제15조 비용지급 명확화
2022. 03. 04 개정	일부 부의 안건 금액 기준 설정 (명확화)
2022. 06. 22 개정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자구수정
2023. 08. 08 개정	이사회종류 분류, 부의안건 조정, 비용지급 내용 및 자구수정